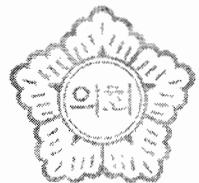
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31회 제1차 정례회 (2019. 6. 19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
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조희옥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경위

- 가. 의안번호: 19-74
- 나. 제 출 자: 마포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19년 5월 27일(월)
- 라. 회부일자: 2019년 5월 29일(수)

2. 제안이유

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·운용하여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구유재산 감소를 방지하고, 대체재산의 안정적 확보와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기금의 목적 및 설치, 존속기한 (안 제1조~제3조)
- 나. 기금의 조성 및 용도 (안 제4조~제5조)
- 다. 기금의 운용대상 및 방법 (안 제6조)
- 라. 기금의 관리·운용 및 기금관리 공무원 (안 제7조~제8조)
- 마.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, 기능 등 (안 제9조~제12조)
- 바.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, 성과분석 (안 제13조~제14조)
- 라. 부칙 (제1조~제2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
- 2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: 2019. 4. 18. ~ 5. 8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: 원안동의
- 3)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신설 사전심사 결과: 원안동의
- 4)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: 원안동의
- 5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: 원안동의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·운용하여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구유재산 감소를 방지하고, 대체재산의 안정적 확보와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.

○ 주요내용으로는

- 안 제4조에 일반재산의 매각·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과, 대부료·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기금의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5조는 기금의 용도로 행정재산의 매입·교환에 필요한 취득비와 행정재산 중 토지, 건물 및 그 종물의 설치와 보존·유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6조는 기금의 운용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- 안 제9조에서 제11조 까지는 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의 설치·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 안 제12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검토의견으로는

-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의 취득·보유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“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이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”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 조문의 내용과 표현형식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, <표1> 에서와 같이 2020년 이후 공유재산 매각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전망이 밝지 않은 시점에서 기금으로 자금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적·사회적 상황 변화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기적절한 조치로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<표1> 연도별 매각수입 추계

(단위: 백만원)

연도별	2020	2021	2022	2023
수입액	40,007	2,007	2,007	2,007

- 다만,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나 안 제5조의 기금의 용도에 있어 행정재산 중 토지, 건물 및 그 종물의 설치와 보존·유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용 될 경우 예산집행의 재량권 확대가 우려 되므로 기금운용 제반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, 최근 위원회의 중복설치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조례가 설치된 바, 안 제9조에 따라 ‘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’를 구성함에 있어 다른 위원회와 중복 여부, 통합 운영 가능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.

참 고 자 료

관계법령

〈지방자치법〉

- 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- 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〉

- 제3조(기금의 설치 제한)** ①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.

- 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 -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 -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5조(기금의 통합·폐지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·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1.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
 2.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
 3.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
 4.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

<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>

일반회계,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는 기금사업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, 기금의 적립기간동안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가능